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261
----------	------

2024년 12월 18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18일
- 다. 상정일자: 제32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4년 12월 18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후환경본부 여장권 본부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20385호, 2024.3.19. 공포, 2025.1.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위원회 회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안 제명).

- 위원회 소관사무 확대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조).
- 위원회 소관사무 확대에 따른 구성위원 수 변경(안 제2조).
- 위원회 소관사무에 건강피해조사가 새로이 포함됨에 따라 건강피해조사분과 위원회 신설(안 제5조).
- 명칭변경(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반영)

※ (개선의견)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봄에 따라 분과위원회 구성 시에도 성별균형 고려.

※ (반영사항) 분과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안 제5조제2항).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4.8.8.~8.28.)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귀수)

가. 개요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¹⁾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전부개정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조항	조 제목	내 용
제명		· (기존)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변경)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운영 필요 사항 규정
제2조	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소관 사무 확대에 따른 명칭 및 구성 위원 수 변경
제3조 제4조	위원 해촉 위원 제척·기피·회피	· 위원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규정
제5조	건강피해조사 분과위원회	·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구성, 회의 개최 등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제6조	조정·재정·중재 위원회	· 조정위원회(법 제47조제1항), 재정위원회(법 제57조제1항) 중재위원회(법 제68조제1항)의 개의·의결 회의 소집 방법 규정
제7조	회부 절차 등	· 분과위원회 및 조정·재정·중재위원회 안건 회부 절차 및 검토 사항
제8조	전문위원 등	·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회의 또는 자문단 구성·운영
제9조	위원회의 사무 처리 등	·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서기·조사관 지정
제10조	수수료	· 수수료 관련 규정
제11조	수당 등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지급 규정
제12조	운영세칙	· 조례 규정 이외의 필요 사항은 위원장이 정함

1) 법률 제20385호, 2024.3.19. 공포, 2025.1.1. 시행

나. 상위법 개정 현황

-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제도와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제도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등²⁾이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해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시민 불편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바 있음.

이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법」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하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기존 제도를 통합·운영 하도록 하였음.

〈환경오염 및 건강상·재산상 피해구제제도 통합운영체계 구축〉



다. 검토의견

- 조례 제명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목적)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³⁾ 및 제25조제2항⁴⁾에 따라

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

3)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①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각각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위원회의 역할이나 위상 및 회의 개최 관련 규정이 빠져 있는바, 위원회가 더욱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임.
- 안 제6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정위원회(법 제47조제1항)·재정위원회(법 제57조제1항)·중재위원회(법 제68조제1항)의 개의·의결·회의 소집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 없음.
-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회부 절차, 전문위원, 사무 처리, 수수료, 수당, 운영세칙을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한 것으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상위법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27회 정례회에 본 안건을 제출한 것은 조례 시행일⁵⁾에 미뤄 적절한 행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임.

4)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규칙 제정 등)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5) 제327회 정례회 안건 시행일 : 2025년 1월 3일 예정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인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업무 및 환경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인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신청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신청 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신청 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신청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건강피해조사 및 분쟁 조정 사무의 직무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건강피해조사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9명 이상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성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전을 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7조(회부 절차 등) ①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른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에 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강피해조사 청원 수용 여부
2. 당사자 간 조정절차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문위원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또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맡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이 맡는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사관은 각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별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8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알선 또는 조정·재정·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재정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감정인,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감정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한 환경분쟁 조정과 관련된 처분·결정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결정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 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이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 위원 임명 등 위원회 구성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